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2명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
발의자: 신용하·이지연·추은희 의원(3인)
찬성자: 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
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춘남
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
장미경·정지원 의원(14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기존 조례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현 시점에 맞게 개정·보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더 확고히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책임감있게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안 제1조~제4조)
- 나.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기업관련단체 지원 등(안 제5조~제9조)
- 다. 기업사랑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안 제10조~제13조)
- 라. 기업 및 근로자 예우·지원 등(안 제14조~제17조)
- 마. 위탁, 협력 체계 구축, 포상(안 제18조~제20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 2)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보증료 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사무처리에 대하여 받는 수수료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미래첨단산업기술기업”이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및 그 수행 기관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항에 따

른 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3.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4. 직전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 및 보완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업의 현황, 지원 수요, 성장 잠재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보육(단, 구체적 사항은 「구미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다)
2. 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

3. 이차보전, 특례보증, 보증료 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4.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
5.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6. 스마트공장 전환 및 ESG 경영 지원
7. 교육·인력양성 및 컨설팅
8. 지역특화산업 육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기업, 벤처기업, 미래첨단산업기술기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중소기업지원시설 또는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지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 촉진지원) 시장은 지역기업의 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

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제10조(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경제국장 2명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제13조의 기업애로상담관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시로 소집하여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관련 애로 건의사항과 규제발굴 및 개선·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과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3. 기업 육성·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기업 경쟁력 강화·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3조(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①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관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노무사 등 전문가 중에서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사항
2. 기업경영에 있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 공장설립 및 창업에 관한 사항
4. 품질, 디자인, 기술개발 관련 애로사항
5. 기타 기업체 관계자가 상담 요청하는 사항

⑤ 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제14조(예우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

을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과 관련한 정부 장관 이상 또는 도지사·시장 표창을 받은 기업
2. 제16조에 따른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수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② 예우기간은 인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단, 세부사항은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2.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3. 시 주요 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4.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4호를 적용한다.

제16조(최고기업인상 등 시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구미시최고기업인상”(이하 “최고기업인상”이라 한다),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구미시최고근로자상”(이하 “최고근로자상”이라 한다)을 각각 시상할 수 있다.

② 최고기업인상은 대기업·중견기업 분야 1명, 중소기업 분야 1명에게, 최고근로자상은 남녀 각 1명에게 수여한다. 다만, 공적이 미미할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시상 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예우대상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
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중단 여부는 제1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제9조의 기업관련단체, 제10조의 구미 시기업사랑위원회, 제13조의 기업애로상담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

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 ⑩ (생략)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 (8) (생략)

나. ~ 다. (생략)

② (생략)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생략)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기업지원과

조 례 명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조의2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p>□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안 제1조~제4조) ○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기업관련단체 지원 등(안 제5조~제9조) ○ 기업사랑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안 제10조~제13조) ○ 기업 및 근로자 예우·지원 등(안 제14조~제17조) ○ 위탁, 협력 체계 구축, 포상(안 제18조~제20조)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예우 기능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명확히 제시 ○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기업관련단체 지원을 통한 활발한 활동 권장 ○ 기업사랑위원회의 규제 발굴·개선 추가 기능 개선 ○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기여한 주체에 대하여 포상함으로써 정책 참여 및 혁신 촉진 유도 <p>□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 기업 친화적 제도 기반 강화로 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안 제6조(지원사업 등)
- 안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
- 안 제13조(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과 관련,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유혜란(☎480-6133)